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한강 야외수영장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강사업본부

내 용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유원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²⁾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1항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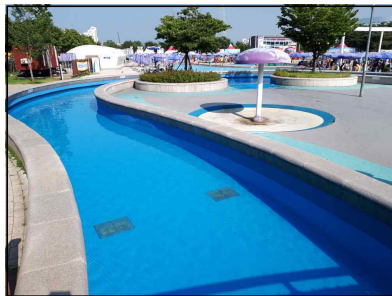
그런데도, 현장점검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5개소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갖추어 영업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안전성 검사 등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한강 야외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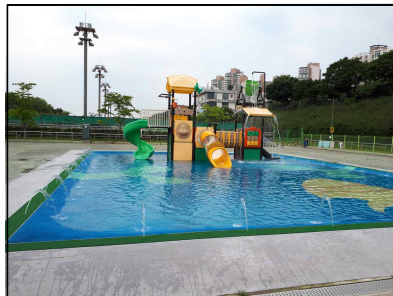
2)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대상,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대상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수영장 운영기간	유기기구·시설 운영 현황
1	한강공원 뚝섬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26~9.14	유수풀
2	한강공원 광나루수영장	"	"	조합놀이대
3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19~9.14	워터에어바운스
4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	"	에어슬라이드(2개)
5	한강공원 여의도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에어슬라이드

[사진 1] 한강 야외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현황사진



유수풀
〈한강공원 뚝섬지구 수영장〉



수중모험놀이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수영장〉



에어슬라이드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수영장〉

조치할 사항

한강사업본부장은,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운영시 해당 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및 신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주의요구)